

서울특별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제 안 설 명

도시안전건설위원회 김 형 재 의원

안녕하십니까? 김 형 재 의원입니다.

이숙자 위원장님과 기획경제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지난 2월 2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「서울특별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.

본 조례안의 취지를 말씀드리면,

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에서는 소상공인연합회를 법정단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. 이에 소상공인연합회의 정의와 소상공인연합회 지회의 지원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상권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.

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포해드린 원안을 참조해 주시기

바라며, 모쪼록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
것을 부탁드립니다.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.

감사합니다.